

한·베트남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 용 상*

<목 차>

- I. 머리말
- II. 베트남 기업관계법의 제정과 그 연혁
- III. 주식회사의 기관구조개관
- IV. 주주총회
- V. 이사회
- VI. 감사(감사회)
- VII. 맺는말

I. 머리말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개방적 경제운용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괄목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인적·물적교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베트남법에 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베트남기업법은 시장경제주체를 규범화 한 중요한 입법인데, 기업법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2 比較法學 (第 13 輯)

의 제정목적은 베트남법제정에 있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조직실체들에게 회사설립과 운영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유기업이 회사제도로 발전하도록 계도하며, 현대적 기업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있다. 기업법은 베트남이 시장경제법질서와 현대적 기업제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처럼 기업법은 시장경제원리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유기업의 회사제도로의 전환과 국제화·세계화에 따라 선진입법에서의 국제공통의 법개념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기업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먼저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바 있는 중국의 회사법을 상당부분 계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법은 이전의 회사법과 개인기업법을 통합한 단행법 형태의 입법으로, 인적회사에 관한 규정은 물론 개인기업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허가주의를 취하며, 국유기업의 회사제도로의 전환, 국가의 간섭 과다 등 우리회사법의 입법정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이 선진입법례를 많이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회사법과의 유사성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특히 IMF개정상법 이전의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들이 더러 있음이 흥미롭다.

기업법은 기업제도의 필요성과 회사·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재산의 원칙, 유한책임의 원칙, 책임과 권리의 균형원칙, 회사법인의 원칙, 설립허가주의와 영업등록주의의 원칙, 회사명칭과 회사형식 상호일치의 원칙, 법에 의한 경영원칙, 회사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법률보호원칙, 회사근로자의 권익보호의 원칙, 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관리체제원칙 등의 회사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

식회사의 운영기구(기관)에 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순서로 양국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관련성을 검토하고, 상위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시에 그 대비책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발전적으로는 이러한 연구의 토대하에 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응용적 비교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베트남 기업관계법의 제정과 그 연혁¹⁾

베트남법제하에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상법, 회사법, 개인기업법, 기업법 등을 들 수 있다.²⁾

1. 상법

상법은 1997년 5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년 5월 23일 공포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법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관리하의 시장경제에 따라 다부문상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상행위를 조정하고 상인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상업활동에서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³⁾.

총 264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상업활동, 제3장 어음, 제4장 상업제재 및 분쟁해결, 제5장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제6장 부칙으로 구

1) Vo Hung Thanh, Tu Luat Doanh nghiep den Luat Thuong mai, NXB. Thong Ke, HCM city, 2001.

2) 회사법과 개인기업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법에 통합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베트남회사관련입법의 연혁적 측면에서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3) 베트남 상법 총강 및 제1조 참조.

성되어 있다. 주요항목을 보면, 산업정책, 상인, 상호, 상업장부, 외국인의 상업활동, 상사매매,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상품경매·입찰, 상업장려, 어음, 상사중재, 포상 및 벌칙, 국가관리 등 기업생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회사법

회사법은 1990년 12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총 4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91년 7월 23일 국무위원회의정서 제222/HDBT호가 첨부되어 총 10개조의 회사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회사법은 1994년 6월 22일 개정되었다. 회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설립, 사업등록 및 해산,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① 회사의 출자자격은 18세 이상의 자연인과 법인으로 하고 있다, ②국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영의 자율을 인정하며. 국가기관, 군은 공적자금을 회사에 출자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설립에 참가할 수 없다. ③ 현물출자도 가능하며 전액납입주의를 취한다. ④ 회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⑤ 설립허가주의 및 영업등록주의를 취한다. ⑥ 유한회사는 주권발행이 불가하며, 주식양도는 제한된다. ⑦ 주주수 11명을 단위로 하여 대소회사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한다. ⑧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7명 이상이며,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명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의 동의를 요한다. ⑨ 신주발행 및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⑩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정족수는 3/4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⑪ 이사회는 3-12인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⑫ 감사는 2명을 두며, 그중 1명은 회계전문가이어야 한다.⁴⁾

4) Quoc Hoi, Laut Cong ty, 1990. 12. 21: Quoc Hoi, Laut sua doi bo sung Laut Cong ty, 1994, 622.

3. 개인기업법

개인기업법은 총 2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12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기업법은 1994년 6월 22일 개정되었다. 법의 명칭 그대로 개인기업에 관한 법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설립, 영업등록, 영업폐지, 파산, 제3장 개인기업의 조직과 활동, 제4장 벌칙, 제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4. 기업법

기업법은 1999년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1990년 12월 21일 공포한 회사법 및 개인기업법, 1994년 6월 22일 개정된 회사법 및 개인기업법을 폐지하며, 기업법이 대체하였다. 결국 기업법은 회사법과 개인기업법을 통합하여 기업생활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기업법의 체제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설립 및 영업등록,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5장 합명회사, 제6장 개인기업, 제7장 기업의 구조변경, 폐지, 파산, 제8장 기업에 대한국가관리, 제9장 상벌, 제10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하면,⁶⁾ ①기업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및 개인기업의 설립, 조직, 활동을 규율한다. ② 기업과 기업가의 국가보호,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③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를 두며,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사장(총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1인 유한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⑥주식회사

5) Quoc Hoi, Luat Doanh nghiep tu nhan, 1990. 12. 21.

6) Quoc Hoi, Luat Doanh nghiep, 1999. 6. 12.

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⑦ 주식회사의 주주수는 3인 이상이며 상한선은 없다. ⑧ 보통주식 외에 우선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며,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된다. ⑨ 회사설립시의 주주는 일정 기간 일정비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주주아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⑩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소집통지는 회일의 7일전에 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의정족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51%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연회 및 속회의 경우 30%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 결의는 보통결의(출석의결권의 51% 찬성), 특별결의(출석의결권의 65%)가 있으며, 서면투표 또한 인정된다.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는 결의 90일 내에 주주, 이사, 사장(대표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⑪ 이사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소집은 의장, 감사 또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자에 의한다. ⑫감사는 3-5명으로 감사회를 구성한다. ⑬ 합병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⑭ 회사의 분할과 분리, 회사의 합병, 회사의 편입, 회사의 조직변경 등이 가능하다. ⑮ 회사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과 책임, 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⁷⁾

III. 주식회사의 기관구조개관

1. 베트남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베트남법상 주식회사의 운영기구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의장, 사장), 감사회를 두고 있다. 이들 기관간에는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상호 견제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7) Chính phủ Việt Nam,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Doanh nghiệp (No. 03/2000/ND-CP), 2002. 2. 3.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이사회와 같은 기구로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관리기관이며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목적,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전권을 가진 기관이다. 즉 법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수권에 따라 경영관리결정을 함과 아울러 회사의 사장 기타 관리직 간부를 임명한다. 이사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이사와 유사한 기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사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이 정한 권한과 회사정관 및 이사회 수권에 따라 회사의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사회 의장이 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감사회는 내부감독기관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자들을 감독한다.⁸⁾

기관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으며, 주주총회에 그 업무를 보고하지만,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와 같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회에 대한 책임은 선임관계에 의한 책임이고, 사장의 이사회에 대한 책임은 고용관계에 의한 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법상의 동사장과 경리의 관계와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2. 한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우리법상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는 외부감사인 등이 있다. 즉 회사의 공동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의 의

8) Quoc Hoi, Luat Doanh nghiep, 1999. 6. 12.

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주주도 독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일정한 감독시정권을 행사한다. 1999년 개정상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양국법상 주식회사기관구성의 특징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관이 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의장, 사장), 감독기관인 감사(감사회)로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양국법에서 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삼권분립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므로 전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고, 또 현대의 기업경영은 복잡하므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당하므로, 주주가 직접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대표이사(의장, 사장)에게 업무집행을 맡기고 있다. 이른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separation of control from ownership)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대규모 공개회사에서는 소위 '지배없는 부의 소유와 소유없는 부의 지배(ownership of wealth without appreciable control and control of wealth without appreciable ownership)'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 등 3단계의 피라미드형 운영기구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주식회사도 의장과 사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집행권을 나누어갈 수 있는 입법적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우리의 시스템과 유사하다.

IV.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권한⁹⁾

베트남법상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주주로 구성(제70조)되며 기업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서 회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의 매각권을 갖는 총주식수의 결정과, 주식종류별 연간배당률의 결정. ② 이사, 감사의 선·해임. ③ 이사회와 감사회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④ 회사의 조직변경 및 폐지, ⑤ 특수한(회사정관에서 매각권을 가진 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의 추가매각에 의한 정관개정) 경우를 제외한 회사정관개정 결정. ⑥ 재무제표의 승인. ⑦ 회사의 정책방향결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재산매각의 결정, ⑧ 매각한 각종 주식의 총주식수 10%가 넘는 주식의 재매입결정, ⑨ 기업법 및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타의 사항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밖에도 회사의 경영관리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법 제70조는 예시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상법상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고 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비교법적 분석을 해 볼 때, 베트남의 주주총회가 단순한 범문의 해석상 우리보다 그 권한이 더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정관의 정함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보조항이 법정되어 있고,¹⁰⁾ 또한 통설은 상법에 유보조항이 없는

9) 상계

10)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①), 신주의 발행(제416조), 준비금의 자본 전입(제461조 ①), 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 2 ②) 등이다.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양국회사법상의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본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베트남법상 주주총회는 최소한 연 1회 소집되며, 총회는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②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의 보통주식을 6개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③ 감사회가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청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30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기업법 제71조). 이사회가 30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가 소집권이 있고, 감사회가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소집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기업법 제81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회일 7일전에 해야 하며 이때 참고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기업법 제74조). 주주의 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특징적이다(기업법 제73조).¹¹⁾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법은 소수주주의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건(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여 소수주주의 보호에 미흡한 편이다. 소수주주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집요건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베트남 주식회사는 주주가 최소한 3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1인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11) 상계

3. 주주총회의 결의

베트남법상 주주의 의결권은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하며, 정족수는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51% 찬성을, 특별결의의 경우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65%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기업법 제7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기업법 제75조) 및 서면투표도 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주주에게 통보해야 한다(기업법 제76조).

한편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 이사, 감사, 사장은 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위법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기업법 제79조)¹²⁾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법에서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주주총회결의의 폐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정함 등이 차이가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사후 모든 주주에게 통보하는 제도와, 결의폐지청구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우리법상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2개월)은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의 폐지요구권자에 사장이 포함된 점은 의문이다. 아마도 이사 아닌 사장이 선임될 수 있고, 또한 회사정관에 이사회 의장이 법률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라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기업법 제85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 입법적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원에 결의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법상의 결의취소의 소와 대비될 수 있는 제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을 요구하며(제368조),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찬성에 의하는데(제434

12) 상계

조), 이러한 결의요건의 완화는 1995년 개정당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법의 결의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오히려 베트남법상의 결의요건이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¹³⁾. 또한 대규모회사의 경우 전혀 그 실효성이 없는 특수결의에 관한 규정이 베트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오히려 우리의 경우보다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V. 이사회

1. 이사회 권한

베트남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는 법정·필요·상설기관이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회사의 관리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외한 회사의 목적, 권리에 관련된 회사전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에 대한 업무보고, 주주총회결의의 집행, 회사의 경영계획 및 투자안의 결정, 회사의 연도재무예산안과 결산안의 작성, 회사의 이익배분안과 결손보전안의 작성, 회사의 주식 및 채권매각가액의 결정, 회사의 분할·합병·해산안의 작성, 회사의 내부관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결정, 회사의 기본관리제도의 제정, 회사의 사장 및 기타 관리직 간부의 임면과 그 보수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기업법 제80조).

베트남의 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의사결정매커니즘과 매우 유사하다.

13) 베트남 기업법 제76조에서는 보통결의, 특별결의의 요건을 각각 출석주주의 결권의 51%, 65%로 정해 놓고,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 규정한다고 하여 회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과 사장의 권력관계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상이하며 오히려 중국의 법제와 유사하다.

한편 베트남법상의 이사회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사회에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후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의 경우에는 회의체로서의 이사회 구성을 강제하지 않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입법을 하게 된 것인데, 발전적으로 베트남에서도 우리의 입법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사의 구성

베트남법상 이사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¹⁴⁾. 그 임기와 구체적인 이사의 수는 정관에 위임하였다(기업법 제80조). 이사의 수가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의 1/3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는 이사를 보충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기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면직·해임된 이사를 교체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활성화와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베트남법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사외이사의 도입을 통해 이사의 민주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지분에 의해 당간부 등이 소위 사외이사제도를 악용하여 몰려와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권을 장악하여 오히려 이사회를 형해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4) 베트남 회사법 제38조에서는 이사회를 이사 3-12인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3. 이사회 의 소집 과 결의

이사회는 매분기 최소한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은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있으며, 감사 또는 정관에 정한 자에 의한 소집도 가능하다. 이사회는 총이사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만약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속한 결의에 따른다(기업법 제82조).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의 주식회사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므로써 이사회 의 활성화 를 견인한다는 점에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 그리고 정족수가 2/3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찬성한 쪽으로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의장

베트남법상 이사회는 회사 경영 및 업무 집행 기구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법정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이사회 활동 계획 수립, 이사회 회의 자료 준비, 이사회 의 결정 이행 · 감독, 기타 법과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기업법 제 81조).¹⁵⁾

우리상법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내적으로는 업무 집행 권을, 대외적으로는 회사 대표 권을 갖는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 이사회 와 대표 이사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통설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에는 업무 집행 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의 이사회 와 집

15) Quoc Hoi, Luat Donah nghiep, 1999. 6. 12.

행·대표기관으로서의 대표이사가 있고, 양자는 독립적 기관이며, 업무 집행권은 양자에 分屬한다고 풀이한다(독립기관설). 이사회는 합의체이므로 그 성격상 업무집행 자체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389조 제1항),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합리적 경영방법으로서 분업조직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기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⁶⁾.

그러나 베트남법상으로는 의장의 선임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점 및 실질적으로 의장과 사장의 권한 배분상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건으로는 이사회와 의장의 관계를 독립기관설에 의하기 보다는 파생기관설에 의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베트남법상의 의장은 결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 아닌, 회사의 운영에서 책임을 지는 주요한 지위로서, 법률상으로도 실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자이다.

그러나 베트남법에서는 다음에 언급될 사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의장이 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사장과 경리가 권한을 분담한 것과 같은 정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5. 사장(총사장)

베트남법상 주식회사의 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의 1인 또는 이사 이외의 자(전문경영인)를 임명한다. 회사 정관상 이사회 의장이 법률상 회사의 대표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사장이 법률상 회사의 대표가 된다. 사장은 주식회사의 일상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16) 鄭東潤, 會社法, 法文社, 2000. 382面

진다. 사장의 직무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관한 결정, 이사회 의 결의사항의 집행,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의 실현, 회사의 기구·조직의 배치, 회사의 내부관리규정의 건의, 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외의 회사직원 임명 및 그들의 임금결정, 법률·정관 및 이사회 의 결정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등 대단히 광범위하며,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을 한다.¹⁷⁾

6. 의장과 사장

이사회 의장과 회사 사장 중 누가 실질적인 회사권력자인가? 이 문제는 중국에서 이사장(동사장)과 총경리의 권한배분과 관련하여 학자간에도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⁸⁾ 우리나라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 의장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장(이사회 의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법률적 지위와 권한도 비슷하다. 사장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사장 또는 총지배인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우리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배인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베트남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장과 유사한 면이 있음은 신기한 연구결과이다. 우리 회사법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사장을 겸하는 일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또한 베트남의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이 회사 사장을 겸할 수 있다는 점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중국처럼 동사장과 총경리로 구분하는 이원적 시스템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사장은 법률적 개념(지위)이 아닌 경영조직적 개념(지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정대표로 회사대표권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만약 대표이사와 사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장은 대내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¹⁹⁾ 후

17) Quoc Hoi, Luat Doanh nghiep, 1999. 6. 12.

18) 상계

19) 우리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별론으로 한다.

자의 예는 베트남법상의 의장과 사장의 관계와 너무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단 베트남법상의 사장은 상법상 기관이나 우리나라의 사장은 상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라는 근본적인 차이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베트남법상의 사장을 우리법상의 총지배인(지배인)과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겠으나, 선임기관이나 책임을 지는 기관 등에 관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관구조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베트남법상의 주식회사의 기관체계는 이처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역지로 우리법체계와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표 이사는 베트남의 의장과 사장의 지위를 함께 누린다고 볼 수 있다.

VI. 감사(감사회)

1. 감사회의 구성

베트남법은 주식회사에 감사회를 두어 이를 필요·상설기구화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사, 사장 및 재무책임자는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기업법 제90조). 감사회는 3-5인의 감사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감사 중 1인은 반드시 회계전문가이어야 한다. 감사 기관의 회의체로의 운영은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2.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회는 ① 회계장부의 작성과 재정보고시 합리성, 합법성, 경영활동의 감독, ②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소수주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연간재정보고를 심사하고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감사, ③ 활동결과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주주총회에 감사보

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의 의견을 참작, ④ 장부기장의 정확성, 충실성, 합법성에 관해 주주총회에 보고, ⑤ 회사의 관리조직의 개선, 경영활동의 운영개선 및 보완방법건의, ⑥ 기업법과 정관에 규정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갖는다.

그리고 감사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신 감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²⁰⁾

3. 감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베트남법상의 감사회제도는 회의체로 운영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것은 독일 주식법상의 감사회제도를 도입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감사는 회의체가 아니다. 베트남법상의 감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감사기관으로써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감사의 권한과 유사하다.

베트남법상의 감사회는 회계전문가 1명을 필수적으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의 구체적 권한확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의 임면절차상 독립적인 감사의 임명을 위한 절차상의 배려 등이 법문상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비교할 때 입법적 보완이 요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기구자체의 형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독립된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산하의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999년 개정상법에서 영미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2/3는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제도는 전술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회사의 지배구조의 개편차원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서

20) 상계

그 제도의 실익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사경영에 있어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이를 입법화 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가 베트남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기능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회사입법상 개혁적 제도의 도입선행을 적극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맺는말

베트남법상 주식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위 하드웨어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주식회사의 기관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사회와 감사회의 형해화를 막고 실질화·기능화 할 수 있는 입법적 배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투명한 회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주식회사의 운영기구적 측면에서 국한하여 활성화 방안을 입법적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주주총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회사에 대한 통제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주식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들이 회사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이·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위임관계로서 전자는 후자를 감독하고, 또 후자는 의장과 사장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경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회도 회사의 회계감사와, 이사 및 사

장의 업무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소수주주의 보호를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적 입법작업이 요망된다.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수주주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²¹⁾.

둘째, 이사회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의 강화는 회사운영의 민주화·활성화를 위해서 필연적이다. ① 과거 국유기업경영자를 임면하는 구습에서 탈피하여, 민영화된 주식회사답게 기업법규정의 정신에 따라 이사의 자격인정과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기업법에서는 이사 수의 상한선(15명 이내) 만 정해 놓고, 그 구성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에서 합리적 이사회구성은 이사회역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문의 구성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현실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산당 간부가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이사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이사회 활성화에 역행한다. 발전적 측면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③ 기업법에 의하면, 사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이사회 감독을 받는다. 한편 의장 외의 이사는 단독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회 위임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사회가 이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장이 사장을

21)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참고하여 각 사안별로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측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하는 예가 법상 가능한데, 이것은 회사법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장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 또한 명문으로 겸직금지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위의 겸직을 금하는 대안으로 공동이사장제도를 인정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사가 업무집행자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사장에 대한 보상과 감독을 강화하여 ‘내부자지배’의 위험을 제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사장은 회사의 고급경영관리인으로 구체적 업무집행책임을 진다. 사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의무를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연봉제 및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사장의 적극성을 자극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²²⁾. 또한 사장에 대한 이러한 보상제도와 함께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장은 통상 이사회와 감독에 의해 일상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광범한 자주권을 가지므로 이사회와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법상 감사회가 전혀 전문적·내실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두고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미법상의 일원적지배구조체제하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베트남주식회사기관구조, 베트남기업법, 베트남주식회사, 베트남법상주주총회, 베트남법상이사회, 이사회회장, 주식회사총사장, 베트남법상 감사회

22) 한국의 상법,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Business Corporation's
Organs in Korean & Vietnam Law

Chung, Yong Sang

Recently, there has been drastic increase in exchange of manpower and goods between Korea and Vietnam.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o-market economy like China, Vietnam has achieved fantastic economic growth by changing the state-owned company into the limited corporation and introducing the advanced foreign systems for corporation.

This paper analytically compares the corporate organs such a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then exam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m. Furthermore, it proposes some recommendations to the problems.

In summary, the Vietnam's corporate law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some unique measures was used to reduce the impacts in the course of changing the state-owned company into the limited corporation.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order:

- I. Introduction
- II. The Enactment of Corporate-related laws in Vietnam and History

- III. Organs of limited corporation
- IV.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V. Board of Directors
- VI. Auditor
- VII. Conclusion

The Vietnam can improve its corporate law by activat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Board of Directors, and strictly enforcing a auditing system.